

	기금운용규정	규정번호	3-5-10
		제정일자	2026. 3. 1
		개정일자	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의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립학교법,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, 기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운용원칙) ① 기금의 운용은 유동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되,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

② 기금의 운용은 주어진 허용위험 범위 안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되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

제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학년도에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기금의 운용 성과는 매년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의 결산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제6조(성과평가) ① 담당자는 기금운용계획 등에 명시된 자산군 또는 상품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한다.

② 성과평가는 각 자산종류 및 상품별로 적절한 기준수익률을 설정한다.

③ 담당자는 운용성과를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평가한다

제7조(투자관리 지침서) ① 투자관리 지침서는 별도로 정하되 기금운용에 대한 투자정책 및 관리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운용의 목적 및 체계
2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
3. 기금의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 방안
4. 외부 위탁운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5. 관련 법령 및 기타 주요의사결정 사항

② 투자관리 지침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하여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정) ①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투자 상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한다.

1. 재무건전성, 자산규모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.
2. 대학의 재무 운영에 따른 주된 거래 금융기관, 거래상품의 특수성, 정보제공 및 거래의 편의성,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.
3. 투자 상품은 투자관리 지침서의 투자가능 자산에 의거하여 국내·외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의 전망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.

② 대학의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운용성과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.

- 제9조(관리자의 행위준칙) ① 기금운용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객관적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기금운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